

##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(안) 제안설명서

### □ 제안이유

- 가.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본유치촉진법 ('94. 8. 3 법률 제4773호) 및 동법시행령 ('94. 11. 30 대통령령 14419호) 이 제정되고,
- 나.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.

### □ 주요골자

#### 가. 위원회 구성 :

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, 민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임명·위촉(제2조 제1항, 제2조 제2항)

#### 나.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(제2조 제3항)

#### 다. 위원회기능 :

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
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등을 심의한다. (제4조)